

예산총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2,573,587	8,177,208
일반회계	258,539,164	7,756,175
특별회계	14,034,423	421,033
기타특별회계	14,034,423	421,03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90,483	17,714
주차장 특별회계	7,984,595	239,53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68,300	23,049
기반시설 특별회계	9,594	288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97,000	20,910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78,600	8,358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3,705,851	111,17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585,39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7년도 지방채 한도액은 2,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고, 간주처리된 명시이월 사업은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서 자원표기

[국] 국고보조금, [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 금

[특] 특별교부세, [별] 자원조정특별교부금, [시] 시비보조금, [구] 자체자원